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고찰

오 현 석* · 양 정 호**

-
- I. 서 론
 - II.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의 배경과 운영현황
 - III. 전략물자 수출통제관리제도의 위반사례
 - IV. 결 론
-

I. 서 론

오늘날 국제무역환경은 예측하기 힘든 복잡한 정치·경제적 환경하에서 고도화·다변화되어 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제경제적 관점에서 상품 및 기술이전의 자유화는 국가간 교역량을 증대시키는 동인으로 기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의 글로벌화를 촉진하는 성장동력으로서 그 순기능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달리 국제정치적 관점에서는 뜻밖의 역기능을 파

* 영진사이버대학 경영학과 조교수(주저자)

** 상지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전임강사(교신저자)

생시킬 수도 있는 개연성을 다분히 함축하고도 있다.

한편 당해 역기능의 대표적 실체라고 할 수 있는 전략물자(strategic items)는 직접적인 군수품은 물론이고 개별 당사국의 국방력 배양·유지에 필요한 물자 및 평상시의 국민생활 향상에 필요한 간접적인 물자까지를 망라하는 개념으로 취급되고 있다.¹⁾ 이 경우 직접적인 전략물자는 외견상 위험한 국가에로의 반출입에 따른 관리감독이 간접적인 전략물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수월하다고 하는 일면이 있으나, 간접적인 전략물자는 그 특성상 현재 유지·관리체제의 복잡·곤란성을 함의하고 있다는 특수성이 부각된다.

여기서 역기능 및 특수성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국제테러나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자 의도하고 있는 단체 또는 조직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응하여 세계 각국은 상호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국제사회의 안전과 평화를 담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 두고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이것이 이른바 본 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export control system for the strategic items)이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는 2001년 9월 미국 911테러사건이 계기가 되었던 바, 이후 미국을 주도로 대량파괴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 이하 ‘WMD’)의 생산 및 이동을 강력히 통제하는 방향으로 가일층 강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이는 현재 WMD의 제조·유통·보관·수출·환적 등을 통제할 법의 체제와 이를 실행으로 옮기려는 국제사회의 동향에 따라 전세계 대부분 국가에서의 국가정책적 의무사항으로 자리매김 되어 가고 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가 국제무역환경에 있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동 체제의 거부 또는 위반 시의 불이익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 까닭에, 특히 미국을 위시하여 대외의존도가 심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동 체제를 적극적으로 이해하여야 함에 있어서나 그 운용에 있어서도 주도면밀히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고에서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의 의의를 명확히 분별하고, 각국별 그 운용실태를 파악하여 동 체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적·제도적 측면에서의 유의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바, 이로부터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대상으로서

1) 이기희,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에 따른 기업의 경영환경 변화와 수출기업 지원방안”, 「경영법률」, 제17권 제2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6. p.1605.

기업 및 정부의 효율적인 역할분담 및 개선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동 제도의 운용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 및 그 실질적 대처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²⁾

II.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의 배경과 운영현황

1. 전략물자 및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1) 전략물자의 의의

우리나라 대외무역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을 참조할 경우 전략물자는 ‘전략물자’와 ‘캐치-올’(catch-all)로서 대별되는데, 전자는 여러 회원국들로 구성되고 전략물자의 수출입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국제적인 협의체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를 총칭하는 이른바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에서 수출통제대상으로 지정·고시되어진 물품을 의미하며, 후자는 WMD 및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곧 WMD의 제조·개발·사용 및 보관 등의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을 말한다.

이 경우 ‘수출통제’ 또는 ‘수출관리’라고 함은 핵·생화학·미사일·재래식 무기가 국제평화를 저해할 수 있는 우려국가나 단체 및 조직에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2) 본 고의 주제와 연관성이 있는 선행연구로서 비교·분석되어진 참조논문으로는 이장희, “전략물자 반출입에 대한 법제도적 문제와 정책방안”, 「외법논집」, 제18집, 한국외국어대학교, 2005. 2., 김종찬, “전략물자 수출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5. 8., 이석기·김석진,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540에 대한 각국의 대응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보고자료, 2005. 11., 이상진 외, “전략물자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간 연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0권 제4호, 한국국제상학회, 2005. 12., 이기희,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에 따른 기업의 경영환경 변화와 수출기업 지원방안”, 「경영법률」 제17권 제2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6., 경희법학연구소 국제안보통상법연구센터, “수출통제의 최근동향”, 「안보통상연구」 제1권 제1호, 한국안보통상학회, 2007., 이희용 외,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2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2007. 등이 있다. 본 고는 이를 종합정리하고 나아가 각국간 동 수출통제의 현황 및 실제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동 수출통제의 운영에 대한 그 실질적 유의점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바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참고한다.

위하여 그러한 WMD의 개발·제조 등에 관련된 물자의 반·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운영체제를 말한다.

현재 전략물자는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자를 지칭하는 의미를 넘어서 군전용의 군수품뿐만 아니라 민수품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어 있는데, 이 경우 전략물자에 포함되는 민수품은 군사적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품목으로서 국제적으로는 이중용도품목(dual-use items)으로 총칭된다.

한편, 국제수출통제체제는 ‘바세나르 협정’(the wassenaar arrangement : 이하 ‘WA’)³⁾과 대량파괴무기 비확산체제인 ‘원자력 공급국그룹’(nuclear suppliers' group : 이하 ‘NSG’),⁴⁾ ‘호주그룹’(australia group : 이하 ‘AG’),⁵⁾ ‘미사일 기술수출통제체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 이하 ‘MTCR’)⁶⁾ 등의 국제기구의 존립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이들의 실상은 당

3) 「www.wassenaar.org」(이하 본 고에서 인용하고 있는 웹사이트[URL]는 본 고 제출시를 기준으로 웹상에 현시되어 있음을 참고한다. 기술편의상 프로토폴명[http://]은 생략하였다.) 원명은 ‘The Wassenaar Arrangement on Export Controls for Conventional Arms and Dual-Use Goods and Technologies’이다.

4) NSG는 원자력 전용물질 및 산업용장비, 곧 이중용도로서의 물품거래가 핵무기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78년 설립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하나로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프랑스, 스페인 등 45개국이 이에 가입하고 있다. 전략물자로서 86개 통제품목을 지정해 두고 있는데, 천연우라늄·플루토늄과 같은 핵물질을 비롯하여 원자로·중수 소·원자로용 흑연·재처리 플랜트 등을 포함하는 원자력 전용품목에 대한 통제리스트[Part 1]와 수치제어 공작기계·머래이징 강관(농축우라늄용 원심분리기 제작가능)·동위원소 분리장비·삼중수소 및 생산관련 장비 등 핵관련 이중용도 통제품목으로 규정[Part 2]하고 있다.

5) WMD 기술의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 1984년 설립된 비공식 조직으로서 1984년 UN 사무총장의 특별사찰단이 이란·이라크 전쟁에서의 화학무기 사용을 발견함으로써 화학무기 생산에 필요한 화학물질의 수출통제 필요성이 제기되자 호주의 제안으로 화학물질 수출통제에 관한 정책 및 조치들을 공동으로 협의하기 위해 1985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15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1차 회의가 열렸다. 여기서 생물·화학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각 회원국들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보교환 및 협의하고, 이미 취해진 조치들의 조화를 도모하며, 추가조치 채택 등을 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비공식 협의체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규제조치(감시 및 허가제도 등)는 각 회원국들이 국가별로 취하도록 되어 있어 그 효율성은 미미한 편이다.

6) MTCR은 1987년 4월 미국을 포함한 G-7국가들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대부분의 미사일 선진기술을 보유한 국가들을 포함한 32개국이 회원국으로 되어 있다. 설립 목적은 500kg 이상 탄두를 300km 이상 발사해 보낼 수 있는 미사일 및 무인비행체, 이와 관계된 기술의 확산 방지와 WMD를 발사할 수 있는 장치의 수출을 억제시키는데 있다. 비공식적인 협의체로서 MTCR은 수출통제 지침과 통제의 대상이 되는 항목을 리

해 체제로부터 기본 지침만을 제정·공시하고, 그 효력은 각국의 국내법에 위임해 두고 있는 특성이 있다. 동 체제를 이른바 ‘비공식 협의체’라고 일컫고 있음은 이 같은 실행구조의 특성에 연유한다.

또한 국제수출통제체제는 각국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운영지침으로서 뿐만 아니라 그 실질적 기반이 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합의된 상황인식에 따른 고시의 핵심이라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다른 한편 동 체제의 운용과정상 수출통제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각국의 국내법에 위임해 두고 있는 사실은 동 체제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제도적 관리시스템의 정착을 더욱 중요시 할 수밖에 없는 요건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평화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국제무역규범으로 인식되어 있음과 동시에,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국내적으로 기업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준수를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하고도 있다.

따라서 수출입 물품이 전략물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위험성 여부와 나아가 당해 물품이 최종적으로 어떠한 용도로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정보는 동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가장 잘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자발적 수출통제의 유의가 선결요건으로서 부각된다.

2)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의 배경

연혁에 비추어 국제수출통제체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구소련이 중심이 된 공산권 국가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자유주의 국가간 1949년 11월에 성립된 이른바 코콤(coordinating committee for multilateral export controls : COCOM), 곧 대 공산권을 향한 ‘다자간 수출통제협력위원회’를 기원으로 한다.⁷⁾

한편 코콤과 동시에 그 관할위원회의 하나로서 ‘대중국수출조정위원회’, 이

스트화한 부속서를 만들어 놓고, 회원국이 이를 각자 자국의 법률에 반영하여 실행하도록 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7) 당초 코콤에 의한 수출통제는 4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행해졌으나, 이후 공산권의 기술향상에 기하여 통제가 무의미해진 품목은 제외되고, 이에 군사목적으로 전용가능한 반도체 및 통신장비 등이 새로 추가되어 150여 개 품목으로 하향조정되었다., 이기희, 전개논문, p.1067 참조.

른바 친콰(china committee for export control : CHINCOM)이 발족되기도 하였는데, 친콰는 ‘북대서양 조약 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sation : NATO)에 가맹하고 있는 국가간 콰의 예속기관으로서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 문제를 담당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국전쟁 발발을 계기로 1952년에 설치되었다.

그러나 친콰는 국제적 긴장완화로 무역통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었던 까닭에, 1957년에 콰에 재통합되기도 하였다. 이후 1980년대 중반 공산권 붕괴와 이에 따른 냉전의 종식으로 인해 유명무실해진 콰는 1994년 3월부터 해체되고, 이후 다른 형태의 수출규제기구를 구성할 것이 결정됨으로써 그 공식적인 역할이 마감되었다.⁸⁾

그러나 초강대국 또는 국제지역간 대규모 전쟁이나 무력충돌의 가능성은 동서 냉전체제에 비하여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중동의 걸프만·팔레스타인·인도·파키스탄·아프리카·아프가니스탄 등 종교·인종·영토분쟁 등을 이유로 지역적인 분쟁이나 테러리스트에 의한 국제평화의 위협은 상존하였는 바, 이에 국가 차원에서 생화학·핵무기·미사일을 보유하려는 우려국(concerned countries)이 등장하여 핵무기·생화학무기·미사일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을 통제하려는 국제협약의 발족되었다. 앞서 언급하였던 소위 NSG, AG, MTCR 등은 그 대표적 실체라 할 수 있는데, 1994년 해체된 콰는 이들 체제를 병합하여 1996년 7월 재래식 무기를 통제하는 협정의 형태로 네덜란드의 바세나르(wassenaar)에서 다시 재결합되어 WA의 형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⁹⁾

WA는 ‘재래식 무기와 이중용도로서의 물자 및 기술’(conventional arms and dual-use goods and technologies)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결성된 다국적 협의회로서, 곧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의 국가간 거래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출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여, 궁극적으로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존의 WMD 확산금지체제를 보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¹⁰⁾

8) 콰의 규정에서 전략물자 통제에 관한 상세는 이장희, “전략물자 반출입에 대한 법적·제도적 문제와 정책방안”, 「외법논집」, 제18집, 한국외국어대학교, 2005. 2. pp. 62~64.

9) 이장희, 전제논문, pp. 64~69.

10) 「www.wassenaar.org/guidelines/GuidelinesDocs/Initial%20Elements.doc」

WA의 주요 골자로서 수출통제대상 품목은 '전략물자 및 기술 리스트와 군수품 리스트'(list of dual use goods and technologies and munitions list)에 공시하고 있는데, 동 리스트는 기본리스트와 별도의 민감품목(sensitive items) 리스트 및 여기에 부속된 고민감품목(very sensitive items) 리스트로 구성되어 있다.

WA상에 있어 수출통제대상 품목은 기술발전 추이와 각 회원국들의 정책수행 경험을 수용·재조정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검토된다. 한편 수출통제대상 품목의 수출기준은 WA에서 통제하고 있는 대상품목을 다른 국가에 수출하거나 또는 수출을 거부하는 것은 각 회원국이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다만 전략물자 및 기술 리스트에 포함된 고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수출 상대국의 정책과 국가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회원국은 수출허가 또는 수출 거부한 내용을 통지해야 함은 필수적 요건이다.

2. 주요 국가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1) 일본

일본은 1987년 발생한 이른바 '도시바 사건'¹¹⁾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구축하였다. 이후 일본은 매년 4월 전략물자 불법전용 가능성이 있는 기업·단체 등 최종 사용자 명단을 갱신하고 이를 경제산업성 홈페이지¹²⁾에 공개하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2002년 이후 동 제도의 운영에 있어 국제수출통제체제의

11) 일본 소재 도시바 기체는 1982~83년 잠수함 프로펠러 제작에 이용되는 첨단 금속결삭 기계 4대를 구소련에 불법 수출하였는데, 문제의 단초는 수출허가신청서에 '저성능 일반 기계'로 허위 기재에 있었다. 이에 소련은 노르웨이에서 수입한 수직제어 장치와 결합하여, 저소음 프로펠러 생산에 전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도시바사의 담당직원이 회사와의 갈등으로 해고된 이후 이 같은 사실을 COCOM에 신고하면서 표면화 되었다. 그 결과 일본 정부는 대미 사과성명 발표 및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후속조치로서 관련회사의 간부를 체포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외국환 및 외국무역 통제법'을 개정하여 전략물자 수출에 대한 형량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전략물자 수출통제검사관을 기존의 40명에서 80명으로 증원하기에 이른 사건을 말한다.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U.S. Department of Commerce), 「BIS Annual Report : Formerly the Bureau of Export Administration」, 2006. Chap. 2.

12) 「www.meti.go.jp」

직접 통제대상품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WMD 개발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의 수출을 통제하는 캐치-올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당해 통제제도의 강화를 모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전략물자 통제대상 확대 및 국제협력 활성화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나아가 2005년 이후 자국 기업의 해외지사·자회사뿐만 아니라 대학 및 연구기관까지 전략물자의 수출과 기술이전에 대해 주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과 동시에 연차에 걸쳐 '아시아 수출통제 세미나' 등과 같은 국제회의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¹³⁾

2)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WMD의 확산방지를 위해 자국법 및 EU 수출규정을 통해 전략물자의 수출을 이중으로 통제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전략물자 관련 기본법인 '수출입법'(import and export act)에 의거, 지정된 허가기관으로 하여금 전략물자 수출입 허가와 이에 부수하는 조사권한을 동시에 부여하고 있다.

한편 네덜란드 정부는 벨기에·룩셈부르크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 WA 등에서 통제하는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한데, 다만 베네룩스 3국은 이른바 관세동맹을 통해 통관절차 간소화에 합의해 두고 있음에 따라 이에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EU) 품목규정'(council regulation EU)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중용도 품목·기술리스트에 해당되는 품목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음과 동시에, 최근에는 EU의 통제방침 외에도 전략물자와 관련된 이중용도 품목의 경유조항(transit clause)과 이에 결부될 수 있는 자금통제에도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 경우 경유조항은 이중용도 물품이 내륙에서 가공되거나 임시로 수입된 후 재수출환적·경유시 허가를 득하도록 하는 것인데, 다만 항구에서 환적을 하지 않고 단순 경유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각한다. 자금통제에 있어서는 자국의 개인 또는 회사가 제3국가간 전략물자 거래에서 재정적으로 관여할 경우 사전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¹⁴⁾

13) 「BIS Annual Report」, *op. cit.*

14) 「BIS Annual Report」, *ibid.*

3) 칠레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바 있는 칠레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는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으나, 자체적으로 통제제도 강화를 모색하고 있는 중에 있다. 이를테면 국방부의 주관하에 관세청·원자력위원회 등이 전략물자 수출통제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특히 관세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통관물품 식별교육을 실시하고 세관업무 효율화를 위해 전산시스템의 개선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칠레 정부는 통제대상물품의 불법수출 차단을 위해 X-ray 판독기·방사능 탐지장치·화학무기 감지기 등 첨단 검사장비를 도입하여 최근 국제사회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추세에 적극 동참하고도 있다.

칠레정부는 2004년 4월에 발표된 'UN안보리 결의 1540'(S/RES/1540)¹⁵⁾을 적극 지지하는 한편, WMD 확산차단 움직임에 남미권의 적극적 동참을 주도하고 있는데, 실례로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 WCO)의

15) WMD 비확산체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던 미국은 2003년 9월 UN 총회에서 모든 회원국들이 WMD 확산행위를 형사처벌하고,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엄격한 수출통제를 입법화하고, 모든 민감한 물질은 자국영역 내에 안전하게 확보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를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2004년 4월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에 의해 제안될 결의안을 기초로 'UN안보리 결의 1540'(S/RES/1540)을 채택하였다. 동 결의안의 주요 골자는 ① 모든 국가들이 핵화학생물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개발·획득·제조·보유·운송·이전 또는 사용을 시도하는 '비국가 행위자'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지원도 제공하지 말 것, ② 모든 국가들이 어떠한 비국가 행위자도, 특히 테러목적으로 핵·화학·생물무기 및 그 운반수단을 제조·획득·보유·개발·운송·이전 또는 사용하는 것과 이러한 활동에 종사하고 참여하며 이를 지원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시도들을 금지하는 적절한 효과적 법규를 자국의 국내절차에 따라 채택하고 시행할 것, ③ 모든 국가들이 전략물자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수립하는 것을 포함하여 핵·화학·생물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내적 통제를 확립하기 위한 효과적 조치들을 채택하고 시행할 것과 동 목적을 위하여 i) 생산·사용·저장 또는 운송 중에 있는 품목관리 및 보안을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 조치들을 발전시키고 유지하며, ii) 적절한 효과적 방호조치들을 발전시키고 유지하며, iii) 필요시 국제적인 협력을 포함하여 통제품목들의 불법적 거래와 중개행위의 탐지·저지·방지 및 대처를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 국경통제와 법집행 노력을 자국의 법적 권능과 입법절차에 따라 그리고 국제법에 부합되게 발전시키고 유지하며 iv) 통제품목의 수출 및 환적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 통제체제를 창설·발전·검토 및 유지할 것 등이다. 동 결의안은 각국이 본 결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취했거나, 그 의도가 있는 조치에 관한 국별보고서를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EU를 포함 전세계적으로 132개국이 동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실정이다(www.iranwatch.org/international/UNSC/unsc-res1540-042804.pdf). 동 결의안에 대한 상세는 경희법학연구소 국제안보통상법연구센터, "수출통제의 최근동향", 「안보통상연구」, 제1권 제1호, 한국안보통상학회, 2007. 03. 전문을 참조.

남미 '지역정보연락사무소'(regional intelligence liaison office : RILO)의 네트워크를 통해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한 정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다.¹⁶⁾

4) 홍콩

홍콩은 헌법상 '일국이체제'라는 원칙하에서 현재 특별행정구로 남아있어 중국과는 별도로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 중국 본토에서는 상무부가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담당하고 있고, 홍콩 통상산업부는 독자적으로 중국 본토에로의 전략물자 불법수출을 감시·통제하고 있다.

홍콩 수출통제시스템은 통상산업부의 '수출입에관한특별행정구령'과 이에 기초한 '전략물자규정'에 근거를 두고 가동되고 있는데, 비록 홍콩이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은 아니지만 동 체제와 연계된 독자적인 통제리스트를 개발하여 거래품목 규제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또한 홍콩은 기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주력하고 있으며, 동시에 수출통제 선진국과의 지속적인 공조를 통해 자국 수출통제제도를 보완·개선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실질적 집행기관인 홍콩해관[관세청]은 허가심사를 위한 물품검사와 함께 영장없이 선박·비행기·차량을 정지시켜 수사할 권한마저도 보유하고 있다. 일례로 전략물자의 불법수출입이 적발될 경우 거래규모가 반영된 벌금형과 동시에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적발 물품은 모두 몰수처분된다.¹⁷⁾

5) 중국

최근 중국은 WMD 관련 물자기술의 공급원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 탈피를 위해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정비를 강화하는 등 국제질서에 적극 순응하고 있기도 한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출통제는 상무부의 주도아래 관세청·외무부 등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중국은 대외무역법을 중심으로 핵·화학 등 분야별로 세분된 20여개 법령을

16) 「BIS Annual Report」, *op. cit.*

17) 「BIS Annual Report」, *ibid.*

근거로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수출통제의 강화를 위해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통제품목 리스트 규제, 곧 캐치-올 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다.

아울러 상무부는 여타 국가기관과 공동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실질적 이행증진을 위한 활동에 주력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자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시도하고 있는 바, 최근 관세청과 공동으로 전략물자-기술 수출통제시스템을 대폭 보완하고, 나아가 수출통제대상 전략물자 목록을 작성·공표해 두고 있음은 그 대표적 사례이다.¹⁸⁾

6) 대만

대만은 고도경제성장의 지속에 따라 주된 무역대상국인 미국과 전략물자 수출통제 협의를 시작한 이후 1995년 '대외무역법'을 제정하면서 통제시스템 운영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대만 경제부 대외무역국이 수출통제규정의 제정 및 수출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관세청은 집행 및 불법수출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이원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동시에 '대만경제연구소'(taiwan economic research institute : TERI)는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출통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만에 소재한 일부업체의 첨단기술이 중국으로 불법 수출됨에 따라 대중국 기술이전 방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기도 한데, 일례로 대만의 '궈닝하이테크사'가 1998년 적외선 촬영장치를, 2000-2001년 사이 'TSMC사'가 반도체기술을 중국으로 불법 수출한 것이 계기가 되어 불법수출시 처벌을 대폭 강화해 두고 있다. 그 내용은 최대 징역 7.5년 및 벌금 37만불에 상당한다.

한편 대만은 반도체·항공조선분야 등의 관련 전문가들이 중국에 고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국가기술보호법' 제정하고 이에 대응하고 있기도 하다.¹⁹⁾

18) 상세는 「www.bis.doc.gov/News/2001/AnnualReport/01annualchap2strattrade.pdf」

19) 「BIS Annual Report」, *op. cit.*

7) 미국

미국 EAR(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²⁰⁾은 미국으로부터의 수출뿐만 아니라 미국 이외의 나라로부터 재수출(re-export)이나 재이전(re-transfer)을 규제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곧 당해 EAR은 역외적용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역외적용은 외국 수출업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강제력은 없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를 준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국 정부기관·기업과의 자사거래에 영향 받을 것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곧 이를 위반할 경우 중대 위반자는 거래부적격자목록(denied persons list: 이하 'DPL')에 게재·공표되게 되고 이에 상당한 벌칙으로는 미국산 품목의 취급제한금지 및 상당한 법적 제재가 부과됨과 동시에 타사로부터 위반자로 미국산 품목의 거래도 제한된다. 이는 곧 미국산 품목에 대한 매매가 불가능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 같은 미국 국내규범을 미국 역외에 적용하기란 실질적으로 곤란할 것임에도, 사실상 이 역외적용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은 위반자를 DPL로 공표하여 위반자의 수출권리를 부인함과 동시에 모든 개인·법인이 위반자와의 미국산 품목에 관한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점에 있다. 이를테면 DPL에 게재된 위반자는 지정된 기간 중 미국산 품목을 취급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기간만료 후에도 명예와 신용을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을 요하게 된다.

한편 실질적으로 역외적용에 의하여 미국 역외 위반자에게 벌금이나 금고형을 집행하기는 어려우나, DPL에 게재·공표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전세계에 그 내용이 알려졌다고 함을 의미하는 바, 실제로 벌금이나 금고형으로 처벌하지 않아도 그 이상으로 기업활동의 생명에 결정적인 타격으로 작용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요컨대 EAR 규정을 준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응당 수출자 자신이 판단할 사항이다. 그러나 각국의 많은 기업이 EAR의 준수 프로그램을 자사의 규정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있는 것은 DPL과 같은 이상의 파급효 때문이다.

통계적 지표로 보아 2005년 1월 기준으로 EAR에 게재된 DPL 건수는 431건이며 이 가운데 약 절반에 해당하는 200여건이 미국 역외 국가의 위반자들

20) 「www.access.gpo.gov/bis/index.html」

이 차지하고 있다. 이는 미국 상무부가 외국의 재수출규제위반의 적발, 곧 역외적용에 매우 철저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3.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운영현황²¹⁾

1) 전략물자관리방법

우리나라는 2007년 대외무역법을 UN 안보리의 결의를 반영하여, 이를 대폭 수정하여 개정해 두고 있는데, 그 주요 골자는 수출통제와 관련하여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모든 기업이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수출입에 있어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거래에 있어서도 전략물자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필히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주무부처는 산업용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가, 원자력과 기술은 과학기술원, 대북 관련은 통일부, 그 밖에 방위산업청, 관세청 등에서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2) 전략물자에 관한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의 주요 개정내용의 골자

2008년 02. 29일부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전략물자에 관한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의 주요 개정 내용의 골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이에 당해 물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득하도록 명문화하였다. 아울러 부가요건으로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자나 최종 사용자가

21)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에 관한 상세는 서민교, "전략물자 관련 기업내부 자율 준수제도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2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2007. 09, pp.183-187을 참조. 본 고에서는 그 주요 골자만을 개략한다.

그 물품 등을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그 수출이 별도의 제한요건에 해당되어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득하도록 하였다.²²⁾

둘째 전략물자 등에 대한 이동중지명령 등에 대하여 전략물자나 상황허가 대상인 전략물자 등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면 적법한 수출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전략물자 등의 이동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에 당해 불법수출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게 그 이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면 적법한 수출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직접 그 이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는 요건을 부가하고 있다. 아울러 세부항목으로서 국제기구나 외국 정부가 국내 항만이나 공항을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옮겨 신는 외국의 전략물자 등의 이동중지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면 당해 물품의 이동중지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상의 규정에 의거 이동중지조치를 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하면 다른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은 국내 또는 외국의 전략물자 등의 국가간 불법수출을 막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²³⁾

셋째 전략물자의 증개와 관련하여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 내국인이 전략물자를 제3국에서 다른 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매매하기 위한 증개

22) 당해 제한요건은 다음과 같다. i) 수입자가 해당 물품 등의 최종 용도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을 기피하는 경우, ii) 수출하려는 물품 등이 최종 사용자의 사업 분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iii) 수출하려는 물품 등이 수입국가의 기술수준과 현저한 격차가 있는 경우, iv)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 등이 활용될 분야의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v)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으면서도 그 물품 등의 수출을 요구하는 경우, vi)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 등에 대한 설치·보수 또는 교육훈련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vii) 해당 물품 등의 최종 수하인이 운송업자인 경우, viii) 해당 물품 등에 대한 가격 조건이나 지불 조건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ix) 특별한 이유 없이 해당 물품 등의 납기일이 통상적인 기간을 벗어난 경우, x) 해당 물품 등의 수송경로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경우, xi) 해당 물품 등의 수입국 내 사용 또는 재수출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xii) 해당 물품 등에 대한 정보나 목적지 등에 대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보안을 요구하는 경우, xiii) 그 밖에 국제정세의 변화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해치는 사유의 일시적 발생 등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한시적으로 수출허가를 받도록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이다(이상 동 법 제 19조).

23) 동 법 제23조.

를 하려면 그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데, 다만 당해 전략물자의 이전.매매가 수출국으로부터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은 것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넷째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경우 기업의 자율적인 전략물자 관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략물자 여부에 대한 판정능력, 수입자 및 최종 사용자에 대한 분석능력 등의 능력을 갖춘 무역거래자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업무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다만 당사자는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당해 전략물자의 수출실적 등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²⁴⁾

다섯째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관련 수출허가, 상황허가, 전략물자 해당여부에 대한 판정, 전략물자의 제조자.수입자의 신고,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 및 전략물자의 수출입 통제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업무 등을 이에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해 두고 있다.²⁵⁾

3) 전략물자 관리방법

전략물자 관리 내지 당해 물품에 대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는 우선 동 물품이 전략물자인지 여부를 판정해야 하는데, 그 판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현재 예스트레이드(www.yestrade.go.kr)라는 공공부분의 정보통신망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

동 시스템은 자가판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에 사전판정을 동 시스템 내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제상거래에 임한 당사자로 하여금 신속.민활한 절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이에 만약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결과가 도출된 경우 정부허가를 득하고 수출하면 되고, 다만 관련기록에 대한 보관은 필수요건이다. 이를 도해하면 이하 [표 1]과 [표 2]와 같고, 참고로 전략기술 사전 판정의 절차는 [표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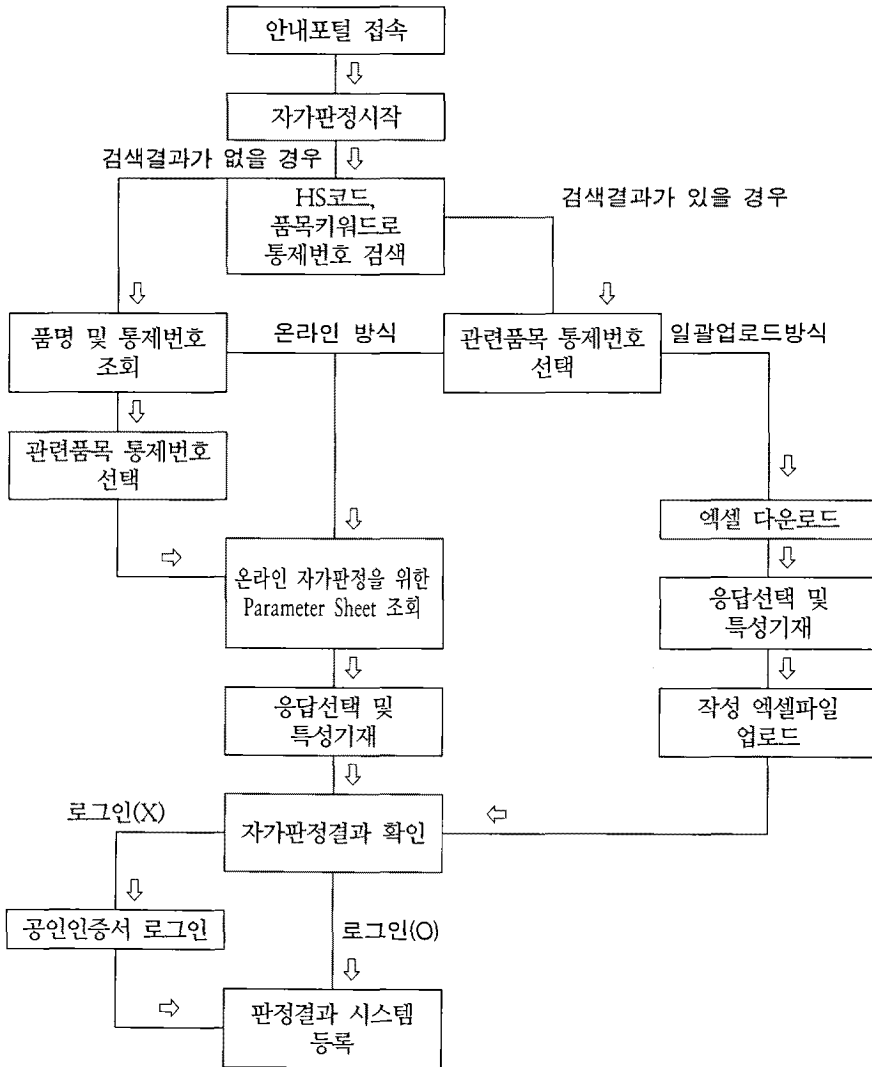
24) 동 법 제25조.

25) 동 법 제28조. 기타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협의회(동 법 제30조) 및 전략물자 수출입 제한(동 법 제31조) 등에 관한 기준과 요건 등도 개정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바, 당해 내용은 이상의 개정내용에 대한 보조적 규정으로서 기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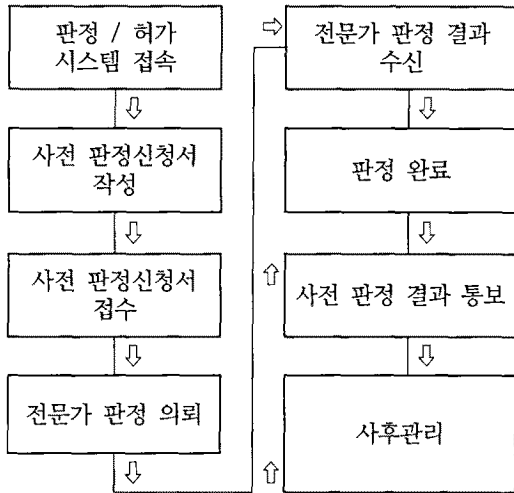
한편 동 시스템은 외국에서도 기업친화적인 우수한 온라인 시스템으로 평가 받고 있는데, 당해 시스템의 특징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대한 국제동향 및 제도 등 모든 정보를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고, 자가판정서 서비스와 사전판정서서비스를 통해 관련 절차를 일원화하여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위한 신청에서 처리과정과 그 결과를 통보받는 일련의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으로 그 순기능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²⁶⁾

26)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제반지표, 이를테면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허가 현황, 캐치-올 허가실적, 전략물자 위법 수출사례 등에 대한 관련 자료는 이하 「www.yestrade.go.kr」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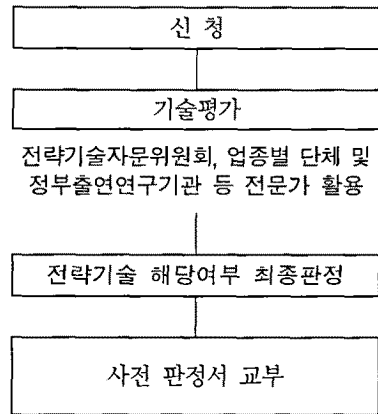
[표 1] 자가판정절차



[표 2] 전략물자사전판정절차



[표 3] 전략기술사전판정절차



Ⅲ. 전략물자 수출통제관리제도의 위반사례²⁷⁾

1. 미국 원산품을 리비아에 우회수출한 사례

1) 대상품목 및 제재일자

미국 원산의 파이프 코팅 재료, 기계 및 부품(2000년 09월 21일)

2) 위반행위 내용 및 근거

수출금지국으로의 우회수출

3) 위반경위

1994년 6월부터 1996년 7월에 걸쳐 T사는 관련 회사('TIC Ltd'와 'Export

27)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운영상 긍정적 사례에 대해서는 앞선 선행연구에서 소개하고 있는 바, 본 고에서는 이하 위반사례에 주안점을 두고 검토하고자 한다.

Materials, Inc.')]를 이용하여 미국 원산의 파이프 코팅 재료, 기계 및 부품을 한국의 동아건설(Benghazi, Libya)에 약 100회 수출하였는데, 동 물품은 수입 이후 리비아 정부의 그레이트 인공천 프로젝트에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실린더 파이프의 안쪽 코팅에 사용되었다.

T사는 필요한 수출허가 없이 영국을 경유하여 리비아(포괄경제제재 대상국)에 출하했고, 출하 총액은 미화 3500만 달러에 이르렀는데, 이에 T사·T사의 사장 및 부사장은 1998년 4월 미국에서 영국·바하마·리비아·쿠바·이라크·북한·이란 혹은 향후 행정기관으로부터 일반 수출금지국으로 지정될 기타 국가로의 수출특권을 박탈하는 잠정적 수출금지처분을 받게 되었다.

4) 제재내용

T사·T사의 사장 및 부사장 그리고 모든 승계자·권리양수인·임원·대표자·대리인·종업원(이하 '위반자')은 기술·소프트웨어를 포함한 EAR 대상품목을 직·간접적으로 미국에서 영국·바하마·리비아·쿠바·이라크·북한·이란 혹은 향후 행정기관에 의해 일반 수출금지국으로 지정될 기타 국가(이하 해당국)에 수출하는 상거래에 관여금지를 명령하였는데, 그 내용은 위반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i) 수출허가 및 허가예외와 수출관리 서류의 취득 혹은 사용을 신청하는 행위, ii) 미국에서 수출되는 EAR 대상품목의 상거래(발주·구입·수취·사용·판매·배달·보관·폐기·통관·운송·대부·기타 서비스) 혹은 기타 EAR 규제대상으로서의 교섭행위, iii) 미국에서 수출되는 EAR 대상품목의 거래, 기타 EAR 규제대상 행위로 이익을 얻는 행위, 간접적으로 iv) T사의 위반자를 대신하여 EAR 대상품목을 해당국 중 어느 한곳에 수출·재수출하는 행위, v) 미국에서 해당국 중 어느 한곳으로 수출되었거나 또는 수출 예정인 EAR 대상품목을 금융 및 기타 거래상의 지원을 포함하여 위반자가 소유·점유·관리하는 것을 돕는 행위, vi) 미국에서 해당국 중 어느 한곳으로 수출된 EAR 대상품목을 위반자로부터 취득 혹은 취득하는 것을 보조하는 행위, vii) 미국에서 해당국 중 어느 한곳으로 수출되는 것을 알면서 혹은 알아야 할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EAR 대상품목을 위반자로부터 미국 내에서 취득하는 행위, viii) 미국에서 해당국 중 어느 한곳으로 수출되었거나 혹은 수출될 EAR 대상품목으로 위반자가 소유·점유·관리하는 품목에 대한 역외거래에 관여하거나, 혹은 품목의 원산지가 어디든 미국에서 수출되었거나, 혹은 수출될

EAR 대상품목이 역외에 사용될 경우의 역외거래에 관여하는 행위 등이다.

5) 시사점

당해 사건은 수출금지 처분이 내려진 위반자가 EAR을 다시 위반하는 행위를 할 위험이 있으면 잠정 처분은 갱신된다고 하는 점, 수출금지 처분이 해제되면 거래가 가능할 것이라고 낙관해서는 아니 되며 혹여 갱신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 처분이 곧 해제될 위반자와의 상거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등이다.

2. 중국 국영 기업 및 그 자회사에 의한 MDC사의 위반사례

1) 대상품목(제재일자)

MDC(McDonnell Douglas Corporation)의 항공기용 공작 기계(2001년 11월 14일)와 Wheelon(Version) hydraulic isostatic stretch press의 금속 가공 공작 기계(2001년 5월 11일)

2) 위반행위 내용 및 근거

MDC(수출자)가 중국 국영기업인 'China National Aero-Technology Import and Export Corporation'(수입자 : 이하 'CATIC')와 그 자회사인 CATIC USA, INC., China National Aero-Technology International Supply Company, TAL Industries, Inc. 와의 상거래 시 허가신청서·최종수요자 증명서에 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를 허위 기재함과 동시에 수출허가조건을 위반하면서 수출 공작기계를 무허가 최종사용자에게 이전한 행위이다.

3) 위반경위

1990년대 초 MDC는 미국내 군용 항공기부품의 생산공장 폐쇄를 결정하고 여기서 사용되던 공작기계 매각을 검토하던 중, CATIC으로부터 중국의 군사용 목적으로 공작기계에 대한 매수청약을 접하고, 이에 CATIC 및 중국내 소재하는 Nanchang Aircraft Manufacturing(중국 군용 항공기를 생산 : 이하

NAM사)이 MDC의 미국내 공장을 방문을 수락하였다. 이에 대해 MDC는 CATIC에게 수출허가 취득이 필요하다는 점과 중국으로의 군사적 용도를 위한 수출의 경우는 허가 취득이 곤란하다는 설명을 부연하였다.

1992년 초부터 1994년에 걸쳐 CATIC 및 그 자회사는 MDC로부터 당해 공작기계를 중국에 수입하는데 있어 MDC가 상무부에 허위 수출허가신청을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공모하였는 바, 그 내용은 실제 최종사용자는 NAM사이고 실제 최종용도는 군용 항공기 생산에 이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최종사용자는 북경에 소재하는 CATIC Machining Company, Ltd.(이하 CATIC M사)이고 최종용도는 MDC와의 공동사업에서 상용 항공기 생산에 이용되는 것으로 위장하도록 공모한 사실이다.

1994년 4월 CATIC 및 그 자회사는 이상의 공모를 바탕으로 최종사용자는 북경의 CATIC M사이며 최종용도는 MDC와의 공동 사업에서 상용 항공기 생산을 위해 이용한다고 하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최종사용자 증명서를 MDC에 제출하였다.

1994년 5월 MDC가 수령한 상기 허위 최종사용자 증명서를 첨부하여 상무부에 수출허가를 신청하였는데, 1994년 9월 미국 상무부는 MDC의 상기 수출허가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서 수출허가를 부여했다. 곧 최종사용자는 북경의 CATIC M사로서 수출 공작기계는 북경의 CATIC M사가 설치해야 하며, 또 상무부의 사전 허가 없이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는 안된다는 것과 최종용도는 MDC와 CATIC 등 공동 사업에서 상용 항공기 생산을 위해 이용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4년 11월 이후 1995년 2월까지 상기 허가조건을 위반하면서 MDC에서 중국으로 수출된 공작기계는 공모한 바 그대로 북경의 CATIC M사에 납품되지 않고 NAM에 불법으로 이전되었다. 반면 1995년 6월 이미 MDC에서 중국으로 수출된 공작 기계가 NAM사로 이전되어 설치되었음에도 CATIC 및 그 자회사는 상무부에 상무부의 사전 허가 없이 공작 기계의 포장을 풀지는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는 허위 서신을 송부하였다.

4) 제재내용

CATIC에 대하여 i) 100만 달러의 형사벌금 및 5년간 보호 관찰 처분, ii) 132만 달러의 민사벌금, iii) 10년간 수출금지 처분, iv) 기타 자회사 공모자에

대하여 5년간 수출금지 처분 v) MDC에 대한 212만 달러의 민사벌금 등이다.

5) 시사점

동 사건은 사실을 허위나 오해를 초래할 만한 방법으로 설명하도록 공모했다는 점 때문에 처벌된 경우이다. 그리고 MDC에 대한 민사벌금 212만 달러는 상무부가 과거에 부과한 민사벌금 가운데 2번째로 높은 금액이다. 허가 신청 시에는 거래에 관한 모든 중요한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특히 의심이 갈만한 최종 수요자, 최종용도에 관해서는 정확하고 완전하게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3. 테러 지원국으로의 위법 수출 사례

1) 대상품목 및 제재일자

컴퓨터 및 부속품, 메모리 칩, CPU 등(2001년 09월 06일, 2002년 03월 04일)

2) 위반행위 내용 및 근거

당사자로서 'Infocom Corporation, Inc.', 'Tetrabal Corporation, Inc.'(미국 텍사스주), I.M.S, 상용명 'Kayali Corp.'(주소는 Tetrabal사와 동일), 'M.A.K', 'Mynet.Net.Corp.', 'A.A.N', 'B.E' 외 몇 명의 개인이 대상으로 그 내용은 Infocom이라는 텍사스 회사가 1997년 이후 2000년에 걸쳐 컴퓨터와 관련 장치를 테러지원국인 리비아와 시리아에 위법 수출한 행위와 관련하여, 2001년 09월 06일 수출금지 명령에 대한 것이다.

3) 위반경위

Infocom은 1997년 이후 2000년에 걸쳐 컴퓨터 및 그 관련 장치를 테러지원국인 리비아와 시리아에 위법으로 수출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는데, 곧 1997년 몰타 경유로 리비아에 컴퓨터 부속품을 고의로 무허가 수출했는데, 동 사는 최종 수하인을 수출신고서에 기재하는 대신 몰타의 운송주선업체

를 기재하였다.

아울러 Infocom은 1999년 4월 Anti-Terrorism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컴퓨터 1대와 메모리 칩 그리고 CPU를 시리아에 직접 무허가 수출하였고, 2000년 08월 컴퓨터를 시리아에 무허가 수출함과 동시에 수출서류상의 물품가격을 고의로 낮게 기재했다. 또한 1999년 06월과 1999년 04월 출하와 동일한 운송주선업체가 수출허가 여부에 대해 조회하자 물류관리인 B.E는 허가가 불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회답했다. 결국 이 수출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허가는 필요한 사항이었다.

이외에도 동사는 시리아의 다른 고객에게 견적을 제출하거나 1997년과 같이 제3국을 경유하여 시리아와 리비아에 수출하려고 시도하였는 바, 그 결과 제재조치로 2001년 09월 06일부로 180일간의 수출금지가 명해졌다. 당해 위반에 의한 제재대상은 Infocom사 뿐만 아니라 사장·부사장 및 4명의 경영진이 포함되었고 동시에 그 가운데 한 명인 I.M.S가 텍사스에서 경영하는 별도의 회사인 Tetrabal사도 제재대상에 포함되었다.

그 후 2002년 03월 20일부 Infocom사에 대한 수출금지를 2002년 03월 04일 이후 180일간 다시 연장한다는 명령이 내려졌는데, 이 명령에는 새로운 제재대상자로서 A.A.N, M.A.K, Mynet.Net.Corp.가 추가됨과 동시에 이전 Infocom사에 대한 제재대상에 포함되었던 사장·부사장 외 3명의 경영진과 I.M.S 및 Tetrabal사도 제재 연장 명령의 대상이 되었다.

2002년 8월 28일부 명령에서 이전 증거와 수출금지기간이 갱신된 03월 04일 이후에 발생한 사안에 근거하여, Tetrabal사와 I.M.S가 허가 없이 리비아와 시리아에 수출을 시도하여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과 근본적으로 수출금지명령(2001년 09월 06일부)을 위반하면서 수출했다는 확증이 추가로 적시되었는 바, 그 주요 골자는 2001년 9월 6일의 수출금지 명령 이후 I.M.S는 이 명령을 위반하면서 컴퓨터 관련 기기를 적어도 10회 이상 수출했음과 동시에 I.M.S는 Mynet.Net.Corp.을 수출자로 하여 적어도 1회 이상 수출했다는 것이었다. 또한 I.M.S는 이상과 같은 수출사실과 관련하여 명령을 위반한 수출에 대해 고의로 은폐하였는 바, 이후 상무부 수출 집행국은 공익성과 재범 방지를 위해 수출특권을 일시 박탈한 2002년 03월 14일 명령을 Tetrabal사와 I.M.S에 대해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당해 연장명령의 취지에 같음하였다.

4) 제재내용

수출금지처분 180일 및 DPL 게재 처분

5) 시사점

DPL에 게재된 경우 교역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예이다. 본 사례는 수상한 조직이나 인물들은 같은 주소나 인접한 주소의 허위상호나 서류상의 회사를 만들어 형태를 바꾸면서 계속 위반할 개연성이 높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또한 최초의 위반 이후 벌금이 부과되지 않고, 또 주범으로 생각되는 I.M.S도 수감되지 않은 상태로 제재를 받아 왔는데, 테러조직의 모금 활동을 근본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결과적으로 얼마간의 자유를 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상무부가 위와 같이 리비아와 시리아행 출하를 경계하게 된 것은 국내 테러리즘 관할 전담팀의 실사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전담팀은 일반적으로 주별 상무부 수출관리국의 집행부 외에 연방조사국(FBI), 관세국, 사법부의 검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IV. 결 론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는 냉전시대 이후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로 재편되어 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향후 이러한 추세는 가일층 강화되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그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여 왔으나, 다른 한편으로 최근 전략물자 불법수출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일면을 보이고도 있다. 이는 최근 남북한 경제협력의 기초위에서 북한에 전략물자 반출의 개연성이 다분하다고 하는 우려의 예표라고 간주될 수 있는 바, 이는 법적·제도적 운영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관리가 요청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기업이 미국과의 교역에 있어 국제수출통제체제의 DPL에 등재될 경우 당해 기업은 최장 20년간 미국과의 수출입 금지 및 캐치-올

시행국과의 3년 이상 수출입을 금지당함으로써 사실상의 파산선고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위반기업 및 사례가 증가하게 되는 경우 국가 신인도는 낮아지게 되고, 미국을 비롯한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와 달리 첨단 과학기술의 도입 기회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동 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동적인 자세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상의 논고에 비추어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대한 대내외적 유의점으로서 제시할 수 있는 사안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그 하나는 정부주도의 제도적 관점에서 국내 수출통제 품목의 판정이 가능하고 나아가 미국의 수출통제 규정에 정통한 전문가의 양성 및 이에 당해 전문가가 통합된 운영체제를 구축하여 수출통제 및 그 기준의 적용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하는 점과 다른 하나는 기업주도의 자율적 관점에서 동 수출통제를 기업의 사회적 책무로 인식하여 자율적 관리체제를 조기에 정착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이 시급히 제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요컨대 수출통제의 실질적 이행여부에 대한 국제적 감시가 날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정부·기업간 시의적인 협력을 통해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대한 사전예방적 조치를 이에 결맞게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략물자 관리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이에 부합하는 기업의 자율적 통제가 선결요건이 될 것이다. 다만 기업의 차원에서는 최소비용으로 수출통제체제를 준수해야 하는 점이 관건으로 부각되는 바, 이에 대한 제도적 인센티브와 수출통제 제도의 적극적 참여기업에 대한 인증제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경희법학연구소 국제안보통상법연구센터, “수출통제의 최근동향”, 「안보통상연구」, 제1권 제1호, 한국안보통상학회, 2007.
- 김종찬, “전략물자 수출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5. 08.
- 서민교, “전략물자 관련 기업내부 자율준수제도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2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2007. 09.
- 이기희,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에 따른 기업의 경영환경 변화와 수출기업 지원방안”, 「경영법률」, 제17권 제2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6.
- 이상진 외, “전략물자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간 연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0권 제4호, 한국국제상학회, 2005. 12.
- 이장희, “전략물자 반출입에 대한 법제도적 문제와 정책방안”, 「외법논집」, 제18집, 한국외국어대학교, 2005. 02.
- 이희용 외,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2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2007.
-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 수출관리 설문조사 보도자료”, 2006.
-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U.S. Department of Commerce), 「BIS Annual Report : Formerly the Bureau of Export Administration」, 2006.
- 「www.access.gpo.gov/bis/index.html」
- 「www.bis.doc.gov/News/2001/AnnualReport/01annualchap2strattrade.pdf」
- 「www.cistec.or.jp」
- 「www.iranwatch.org/international/UNSC/unsc-res1540-042804.pdf」
- 「www.meti.go.jp」
- 「www.stic.kita.net」
- 「www.wassenaar.org」
- 「www.wassenaar.org/guidelines/GuidelinesDocs/Initial%20Elements.doc」
- 「www.yestrade.go.kr」

ABSTRACT

A Study on the Prospects of Export Control System Regarding to the Strategic Items

Oh, Hyon Sok · Yang, Jung Ho

Over the last several years, regarding to the strategic item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seen governments make more formal commitments to adopt and implement effective export controls to counter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WMD).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40(that is 「S/RES/1540」) stands as the most important of these commitments. Many UN members already have export control laws and regulations in place to prevent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Many members also participate in a variety of formal and informal international arrangements to coordinate their export control efforts. Nonetheless, each of these countries has its own unique legal framework for export controls. This generates considerable diversity in the construction of the specific national legal authorities. Over the last few years, however, a consensus over what constitutes the key elements of effective legal authorities for export controls has begun to emerge. Evidence for this development comes in the identification of best legal authorities or principles at several multilateral conferences on export controls.

Key Words : Strategic Items, Export Control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UNSCR 1540